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001
----------	------

제출년월일 : 2005. 6. .

제 출 자 : 제 천 시 장

1. 제 안 이 유

-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주민참여가 강화되고 지방교육 행정체제의 다양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제천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우수학교 육성과 아울러 우수한 지역 인재 배출로 미래로 도약하는 제천시를 건설해 나가고자 교육경비보조와 관련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추진하기 위함.

2. 주 요 내 용

- 교육경비보조기준액을 매 회계연도마다 시세 수입액의 2%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 보조사업의 범위를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등으로 정함(안 제3조)
- 각급 학교에 대한 보조사업과 교육경비보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함(안 제4조)
-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대상사업 선정과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

3. 근 거 법 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법률제7328호 2005. 1. 5 전문개정)
-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17025호 2000. 12. 27 일부개정)

4. 의 안 전 문 : 불 입

5.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첨 부 : 1. 기타참고자료(법령등) 사본 1부
2. 입법예고 사본 1부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기준액의 제한) ①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시세수입액(세외수입을 제외한다)의 2%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보조기준액은 학교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직접 시가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포함한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위원회)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구성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제천시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관광건설국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제천시 의회 의원 2인, 제천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2인 및 학부모 2인으로 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나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한다.
- ⑤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당해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교육경비보조 신청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 2. 보조사업의 타당성
-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 4. 보조금의 지원 규모
- 5. 기타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매년 예산편성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보조의 신청 등) ①시장은 당해년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 대상사업과 예산액을 통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사업비
-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완료예정일
-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금액과 산출기초
- 3. 보조사업의 효과
-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4.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학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제11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2조(정산검사 및 감독)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제천시위원회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규 정 (발 체 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법률제7328호 2005. 1. 5 전문개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⑥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17025호 2000. 12. 27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가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시·군 및 자치구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정 2005. 03. 16 조례 제70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과 시·군및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평택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학교" 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평택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 사업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시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당해연도 시세의 100분의 2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사업의 신청등) ①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매년 5월 30일한 평택교육청교육장 및 평택지구협동장학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초·중학교는 평택교육청교육장, 고등학교는 평택지구협동장학협의회장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6월 20일한 평택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신청학교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및 기대효과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보조 받고자 하는 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 및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36 【제1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부록】

제5조(사업의 지원여부 결정)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우선 순위부 및 보조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 및 지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4.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여론
5. 특정학교에 대한 중복지원 및 선심성 지원여부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평택교육청, 평택지구 협동장학협의회 및 해당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지원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심의시 필요한 경우 심의대상 학교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적정하고 균형있는 지원을 위하여 평택시 교육경비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위원은 평택시 기획재정국장, 총무국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평택시의회 의원 2인, 평택교육청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과장급 공무원 1인,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인사 또는 학부모 대표 2인, 시민단체 대표 1인으로 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업무 주관 과장이 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의 설정
2.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심의
3. 신청된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지원 우선순위 결정
4.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정기예산 편성시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택시각종위원 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 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완공)보고서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및 기타) 기타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결정, 통지 등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택시보조금관리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하고,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5. 03. 16 조례 제7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교육경비보조에 관한조례

[2004. 11. 19] 조례 제2342호

소관부서 : 문화관광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청주시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 학교 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기준액의 제한) ①청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당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시세수입액(세외수입을 제외한다)의 2%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보조기준액은 학교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직접 시가 추진하는 사업비등을 포함한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위원회)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청주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구성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한다.

③위원은 시 부시장 1인, 관계국장 2인,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인,각급학교 관할 교육감(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공무원 2인 및 학부모 3인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나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한다.
- ⑤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당해 업무과장이 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교육경비 보조신청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 2. 보조사업의 타당성
-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 4. 보조금의 지원 규모
- 5. 기타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정기회는 매년 예산편성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내용 및 자료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의 신청 등) ①시장은 당해년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과 예산액을 통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사업비
-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완료예정일
-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금액과 산출기초
- 3. 보조사업의 효과
-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4.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학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제12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3조(정산검사 및 감독)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청주시각종위원회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04. 11. 19 조례 제2342호)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공고 제 2005-338호

제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월 19일
제 천 시 장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2. 제정이유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주민참여가 강화되고 지방교육 행정체제의 다양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제천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우수학교 육성과 아울러 우수한 지역인재 배출로 미래로 도약하는 제천시를 건설해 나가고자 교육경비보조와 관련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추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교육경비보조기준액을 매 회계연도마다 시세 수입액의 2%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 보조사업의 범위를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등으로 정함(안 제3조)
- 각급 학교에 대한 보조사업과 교육경비보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함(안 제4조)
-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대상사업 선정과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6월 8일까지 제천시장(참조 복지사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0-5402, FAX 640-5409 E-mail: jsk0718@hanmail.net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